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1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7626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9. 1. 11.
판 결 선 고	2019. 2.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09,191,200원, 지방교육세 128,679,120원, 농어촌특별세 64,339,56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탁업자로서 2014. 2. 20. 집합투자업자인 B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투자신탁의 재산으로 서울 송파구 C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3. 19.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통지를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2. 2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5. 14. 법률 제12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세액이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24.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 시점에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집합투자기구 등록 이전에 위 다.항과 같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한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원고의 취득세 조기 결정·경정결정 신청에 따라 2014. 8. 12.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기존에 감면된 세액(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8621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피고가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순

판사 김병훈

판사 김우진